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1. 펀드명: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 2023년 12월 05일

3. 정정사항

구분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재무정보 등 주요 수치 업데이트	최근일 갱신	-	<p>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운용현황 및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p> <p>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p> <p>라. 운용자산 규모</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법 개정사항 반영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법 개정사항 반영	<p>투자자 유의사항</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투자자 유의사항</p> <p>·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 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제 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최근일 갱신	<신설>	<p>변경시행일: 2023-12-05</p> <p>변경사항: 모펀드 구조 변경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및 법 개정사항 반영</p>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펀드 구조 변경사항 반영	<p>다.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마이다스 거북이 40 나눔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p> <p><별첨 1> 참조</p>	<p>다.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삭제></p> <p><별첨 1> 참조</p>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p> <p>(1) 마이다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⑧ 증권의 대여</p>	<p>※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p> <p>(1) 마이다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⑧ 증권의 대여(주1)</p>

		<p>⑩ 증권의 차입</p> <p>(2)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두자신탁(채권)</p> <p>5. 증권의 대여</p> <p>8. 증권의 차입</p>	<p>⑩ 증권의 차입(주2)</p> <p>(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p> <p>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p> <p>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p> <p>(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2) 마이다스 우량채권 증권 모두자신탁(채권)</p> <p>5. 증권의 대여(주1)</p> <p>8. 증권의 차입(주2)</p> <p>(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입니다.</p> <p>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p> <p>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p> <p>(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p>	<p>법 개정사항 반영</p>	<p>다. 기타 투자위험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다. 기타 투자위험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증권대차거래 위험</p> <p>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법 개정사항 반영</p>	<p>나. 과세 (1) ~ (2) 생략</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하 생략)</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나. 과세 (1) ~ (2) 현행과 동일</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p> <p>※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대주주 변경</p>	<p>가. 회사개요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재관(10%) 등</p>	<p>가. 회사개요 [주요주주현황] 현희현(10%), 이지혜(특수관계인 포함) (10%) 등</p>
<p>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p>	<p>법 개정사항 반영</p>	<p>나. 주요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 내역 및 배분결과</p>	<p>나. 주요업무 (2)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③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 내역 및 배분결과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p>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법 개정사항 반영</p>	<p>▶ 임의해지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 임의해지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법 개정사항 반영 등</p>	<p>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8.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p>	<p>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p>

	<p>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 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	--	---

<별첨 1> 정정 전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마이더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마이더스 거북이 3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40 나눔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	신탁재산의 50% 이상 60% 미만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혼합)	-	-	신탁재산의 50% 미만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50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	-	신탁재산의 50% 미만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70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	-	신탁재산의 30% 이하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	-	신탁재산의 30% 이하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9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	-	신탁재산의 20% 이하 투자
마이더스 퇴직연금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신탁재산의 70% 이상 투자	-	신탁재산의 30% 이하 투자
마이더스 퇴직연금 거북이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마이더스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	-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마이더스 블루칩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신탁재산의 50% 이상 60% 이하 투자	-	신탁재산의 50% 미만 투자
마이더스 블루칩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C호(주식혼합)	신탁재산의 60% 이하 투자	-	신탁재산의 60% 이하 투자
마이더스 백년대계 어린이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	-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	-	-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마이더스 뉴트렌드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신탁재산의 60% 이상투자

<별첨1> 정정 후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마이더스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마이더스 거북이 3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50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혼합)	-	-	신탁재산의 50% 미만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50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	-	신탁재산의 50% 미만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70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	신탁재산의 30% 이하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	신탁재산의 30% 이하 투자
마이더스 거북이 9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	신탁재산의 20% 이하 투자
마이더스 퇴직연금 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신탁재산의 70% 이상 투자	신탁재산의 30% 이하 투자
마이더스 퇴직연금 거북이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마이더스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마이더스 블루칩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혼합)	신탁재산의 50% 이상 60% 이하 투자	신탁재산의 50% 미만 투자
마이더스 블루칩배당 증권 자투자신탁 C호(주식혼합)	신탁재산의 60% 이하 투자	신탁재산의 60% 이하 투자
마이더스 백년대계 어린이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	-
마이더스 우량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채권)	-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마이더스 뉴트렌드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신탁재산의 60% 이상투자